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3.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3. 15.
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5명(서보영, 김정희, 박왕규, 김장관)
- 발의일자: 2023. 3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3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3. 3.(금) ~ 3. 9.(목)

2. 개정이유

-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서구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, 독감주사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“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” 및 “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” 을 추가함(안 제6조)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에 따라 후생복지운영 위원회 “외부위원 위촉” 관련 조문을 삭제함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3. 3. ~ 3. 13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“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” 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“예방접종비 지원” 을 추가로 규정하고,
-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 에 따라 내부행정사항 협의체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삭제·정비하는 것으로,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상 위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지방공무원법

제6조(임용권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 <개정 2021. 10. 8.>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0. 8.>

【 현행 조례 】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22. 4. 1.)

1. “소속공무원”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, 보건소,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후생복지제도”란 소속공무원의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.
3.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육아·질병·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
2.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
3.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
4.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

③ 구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, 공무원직근로자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단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4. 1.)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·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

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·매점·휴게실 등
2.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, 건강관리실 등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·콘도·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2. 21., 2022. 4. 1.)

1.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
2.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·체육 활동 지원
3.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
4. 정년·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(기념품) 지급
5.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
6.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
7. 건강검진비 지원
8.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경비 지원
9. 본인, 배우자, 자녀 및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.) 장제 시 장제용품 등 지원
10.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)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.

1. 기본항목: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·운영되는 항목
2. 자율항목: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·운영되는 항목

② 구청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(이하 “선택안“ 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.

제9조(기본항목)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.

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·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.

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율항목)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·자기계발·여가활용·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.

제11조(복지점수의 사용한도)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·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(이하 “복지점수“라 한다)를 두며,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,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복지점수의 부여기준) ① 구청장은 구의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,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.

1. 기본복지점수: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

2. 변동복지점수: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

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, 가족상황,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,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3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.

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.

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·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.

④ 전직·직위해제·면직·해임·과면·휴직·과전(휴직 또는 과전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.

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

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복지카드의 사용)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5조(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1.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소속공무원
2.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 (개정 2022. 4. 1.)

제17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8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후생복지시설의 운영
2. 후생복지사업의 시행
3.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·운영

제19조(회계처리의 특례)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,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